일감법학 | 제30호
2015년 2월 3-28쪽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Ilkam Law Review
Vol.30, Feb., 2015. pp.3-28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

중국조선족의 이주와 관련된 중국국적법의 현행 과제

Emigration of Chinese Korean and Status Quo of China's Nationality Law

엄 해 옥*
Yan Hai-Yu

목 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중국국적법의 산생과 제정
Ⅲ. 중국국적법의 현안과 과제
Ⅳ. 나가는 말

국적은 국가가 자국민을 정하고 자국민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에서는 국제사회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그리고 자국의 수요와 권익을 위해 국적법을 제정・개정하고 있다.

이민은 국적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으며 국적법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중국조선족은 이주 민족이다. 그들의 이주는 일찍이 국적의 적극적인 충돌을 발생시키면서 청나라 국적법의 제정에 큰 영향을 주었다. 동서냉전을 배경으로 제정된 중국의 현행국적법은 제정 시 타협을 하였으나 그 규정과 내용들이 간결하여 글로벌 시대의 요구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2차 세계대전이 결속되면서 국적 문제는 국적권에 대한 제한으로부터 보호로 전이되었고 발전되어 왔다. 세계의 중심이 유럽에서부터, 다시 아시아로 이전되기 시작하면서 그 중심이 동아시아에 있다는 설도 있고 중국에 있다는 설도 있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세계의 중심이 동아시아든 중국이든 아시아로 움직여 오기 시작하면 중국 국적은 세인들의 관심을 모으게 될 것이고, 따라서 중국으로 향한 이민, 그리고 이민으로 생기는 국적충돌은 불가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중국의 현행국적법이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자국민의 이익과 자국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국적법의 목적이고 국적법 개정의 최종

투고일 : 2014. 12. 23. / 심사의뢰일 : 2015. 1. 13. / 게재확정일 : 2015. 2. 3.

* 중국 연변대학법학원 부교수
Professor, Yanbian University Law School, China

목적으로 되면서 국적법의 가치는 국가의 주권 보장과 국민의 인권 보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의 변화와 함께 중국에서도 이제 곧 나타날 이민과 역이민에 대비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국제공법과 국제사법, 그리고 자국민의 이익과 자국의 권익, 나아가서는 중국의 위상에 수응되는 국적법으로 개정할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중국조선족의 이주, 세계중심의 전이, 중국국적법의 현황, 중국의 위상, 중국국적법의 개정

Ⅰ. 들어가는 말

이민은 국적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국적법과 충돌을 일으킨다. 중국조선족은 이주민족이다. 조선이주민들의 이주는 국적의 적극적인 충돌을 일으키면서 국제분쟁을 발생시켰고 청나라 국제법의 제정에 큰 영향을 주었다. 지난 20세기 말부터 시작된 중국조선족들의 역 이주와 관련하여 중국 국적법을 분석해 보면 현대 국제법의 흐름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19세기 중기에 있었던 혹독한 자연재해와 20세기 전후에 있었던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통치로 하여 조선반도에는 두 차례의 이민역사가 있었으며 그때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중국으로 이주하였다. 조선이주민들에 대한 보호를 구실로 한 일본의 간섭에 직면했던 청나라는 대청제국의 주권과 자국인들의 권익을 지켜내기 위해 "치발역복(薙髮易服)"[1], "귀화입적(歸化入籍)"의 불문법을 시행하였다. 1909년에는 중국의 첫 성문국적법인 "대청국적조례"를 제정하였고, 그 이듬해인 1910년에는 "대청국적조례실시세칙"을 공포하였다. 이러한 법의 제정 및 시행에는 조선이주민들의 이주가 중국국적법의 제정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후 1960년대에 시작된 "문화대혁명"[2]은 1970년대에 가서야 결속되었고 개혁개방의 시작과 함께 1980년에는 "중화인민공화국국적법"("중국국적법"으로 약칭)이 제정되었다.

중국의 문호가 개방되면서 적지 않은 중국공민[3]들은 미국, 호주, 일본 등 발달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고 이주하기 시작하였고 중한수교와 함께 중국조선족들도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국제이민행렬에 들어섰던 적지 않은

1) 청정부가 간도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에게 머리를 변발하고 만인들의 의복을 착용할 것을 강요한 정책이다.
2) 전칭은 "무산계급문화대혁명"으로서 "문화대혁명" 또는 "10년 동난"이라고도 줄여서 불린다.
3) 중국에서는 내국인을 공민으로 칭한다.

이민자들은 점차 발달한 국가에서 자신의 적응력이 차함을 알았고 급변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발전과 함께 자기가 소유한 국적이 더는 재부의 상징으로 되지 않음을 발견하고 있다. 한국국적을 취득한 원 중국조선족들도 마찬가지라 여겨진다.

제2차 세계대전이 결속되면서 국적 문제는 국적권 부여의 제한보다는 승인으로 이어졌다. 세계의 중심이 유럽에서부터 아시아로 움직여 오기 시작하면서 그 중심이 동아시아에 있다는 설도 있고 중국에 있다는 설도 있다. 세계의 중심이 동아시아든 중국이든, 아시아로 움직여 오기 시작하면 중국국적은 세인들의 관심을 모으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민으로 생기는 국적 문제의 발생과 국적충돌은 불가피 할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여기에서 중국의 현행국적법이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본고에서는 청나라 국적법의 제정 연혁과 중국 공산당의 국적 조치에 대하여 논하고(II), 중국 국적법의 현안과 과제 중 중국인들의 이주 연혁과 이주 이유, 특히 중국조선족들의 이주 연혁과 이주 이유에 대해 논하고 중국 국적법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III).

Ⅱ. 중국국적법의 산생과 제정

1. 청나라국적법의 제정

1.1 불문국적법의 산생

법은 존재의 형식에 따라 불문법과 성문법으로 나뉜다. 불문법은 입법절차가 없고 입법기관의 제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그 주요 특점으로 법조문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지만 국가의 인정을 받아 법률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관습법과 관례법은 대표적인 불문법이다. 19세기 말, 청정부가 조선이주민들을 위해 만들어낸 “치발역복”, “귀화입적”조치는 관습법으로서 중국의 첫 불문국적법으로 판단되고 있다.

1644년에 청조정부가 중원으로 들어간 후 장백산과 압록강, 두만강 이북의 1,000여 리 되는 지역을 청조의 발상지로 삼아 봉금(封禁)지구로 정하였다.[4] 그러나 조선북부의 조선이주민들이 봉금령을 어기고 두만강 북쪽에 와서 허가를 받지 않고 농업을 하는

4) 조명철, “조선족의 수전개발”, 김택/김인철(대표편저), 길림조선족, 연변인민출판사, 1995, 19쪽.

것은 규제할 수 없었다. 19세기 중엽의 조선반도에는 수많은 이재민과 이주민들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원인은 엄중한 자연재해와 이조의 가혹한 통치로 조성된 경제쇠퇴에서 기인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9세기 중엽부터 세금수입을 늘이기 위하여 이조정부는 "3징 정책"[5]을 실시[6]한 결과 농민들의 반발을 샀다. 자연재해와 이조통치를 피하기 위해 조선반도의 많은 사람들은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이주하였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사이에 동북지구에 거주하는 조선이주민 수는 해마다 늘어나 1894년에 6,500명, 1904년에 78,000명, 1910년에 109,000명에 달하였고 1918년에는 무려 36만 명에 달하였다. 연변지구에만도 1907년에 16,300여 호에 77,000여명에 달하였는 바 연변지구 총인구의 80%를 초과하였다고 한다.[7]

아편전쟁 후 제국주의열강들이 앞다투어 중국을 침략하였다. 제정러시아는 "중로애훈조약"과 "베이징조약"에 의해 중국동북의 많은 영토를 강점하였다. 청정부는 양곡을 해결하고 변방수비를 강화하여 짜리러시아의 침입을 막기 위해 점차 봉금을 폐지하고 조선이주민들이 동북에 이주해 오는 것을 허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1881년에 청조정부는 훈춘에 "초간총국(招墾總局)"을 세웠으며 산동일대에 사람을 파견하여 농민들을 모집하여 황무지를 개간하게 하였다. 이와 동시에 조선개간민들이 월강하여 황무지를 개간하는 것을 허용하는 일련의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뒤로 광서 8년(1882)에 청조는 정책을 개변하여 과거를 묻지 않고 조선인들의 호적을 일률로 조사하여 전부 새 호적에 편입시키고 중국의 "치발역복"정령에 복종시킨다고 하였다.[8] 1885년에는 두만강이북의

---

5) 첫째로, "전정(田征)"인데 "전결"(조선 봉건사회에서 조세를 계산하는 토지면적단위로서 "목"이라고도 하였다.)을 단위로 하여 농민들에게 안긴 전조를 전징이라 하였다. 전조에는 "국납" (국세)과 "선급(船給)" (수상운임) 등이 망라되었다. 국세 가운데는 또 경성관리들에게 바치는 전조미 등 십여 가지 세금이 망라되었다. 이 밖에 또 "선가미(船價米)"(운인)와 "인정미"(人情米) 등 몇 가지를 바쳐야 했다.
둘째로 "읍징(邑徵)"인데 이것은 지방관청에서 징수하는 세금이었다. "읍징"의 명목과 그 수량은 모두 지방관청에서 자체로 정하였는바 과세의 수의성이 컸다. 이런 세금이 도합 30여 종에 달하였는 바 아주 가혹하였다.
셋째로 "군정(軍征)"인데 이것은 호를 단위로 하여 바치는 군포(軍布)를 말한다. 무릇 16~60살사이의 장정은 해마다 한 사람당 일률로 천을 1필씩 바쳐야 했다. 매 5년에 한 번씩 변화정황을 조사 등록하여 새롭게 과제를 안기었다. 이 기간에 이사 갔거나 도망간 집이 있으면 그냥 있는 것으로 쳐서 다른 집들에서 골고루 풍기였다. 심지어 죽은 사람마저도 호적에서 지우지 않고 군포를 받아냈는데 이것을 "백골징포(白骨徵布)"라 하였다. 김택/김인철(대표편저), 위의 책, 35쪽에서 인용.

6) 이권수, 장백림강지구조선족의 조기이주; 김택/김인철(대표편저), 위의 책, 35쪽.

7) 조명철, 앞의 책, 20쪽.

8) 孙春日/朴兴镇, "清代越界朝鲜人编入华籍之争与中国国籍法的制定", 延边大学学报, 第2期, 2000, 55쪽; 杨昭全等编, 中朝边界沿革及界务交涉史料汇编, 吉林文史出版社, 1994, 228쪽에서 재인용.

길이가 700리 되고 너비가 50리가량 되는 지역을 떼내어 전문개간구로 하고 화룡욕과 광제욕, 서보강의 통상국을 월간국으로 고치어 조선개간민들을 관리하는 일을 겸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1890년부터 청정부는 동북경내의 조선이민들에게 "치발역복", "영조납조(領照納租)"의 입적정책을 실시하였다.[9] 즉 청나라의 불문국적법인 "치발역복", "귀화입적"조치를 실시하였다. 조선이주민들은 본 조치에 대해 두 가지 방법으로 대응해 나섰다.

첫째, "치발역복", "귀화입적"조치에 대한 거부였다.

"치발역복", "귀화입적"조치는 조선이주민들의 상투와 두루마기를 청나라 만인(滿人)들의 머리모양과 옷 모양으로 개변시켜 귀화를 표한 것으로 조선이주민들의 자존심과 민족심에 손상을 주는 국적조치였는바 조선이주민들은 이러한 정책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다. 그리하여 본인 소유의 토지소유권을 잃더라도 치발과 역복을 하지 않고 조선반도로 돌아가는 조선이주민들이 있었는가 하면 토지소유권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한 조선이주민들, 그리고 3년간 개황한 개간지를 몰수당하고 전민으로 된 조선이주민들도 있었다고 한다.

둘째, "치발역복", "귀화입적"조치에 대한 수긍이었다.

중국으로 이주한 대부분의 조선이주민들은 파산농민들로서 농토지는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는 치발역복을 하고 귀화입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조사에 의하면 개척 초기에 그들은 단독으로 이주하여 청나라국적에 입적한 것이 아니라 친척과 친우들이 패를 지어 한 패 한 패씩 건너와 그들 중에서도 청나라 지방관리나 지주와 교섭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을 내세워 입적시키고 상투를 자르고 만복(滿服)을 입게 하였다.[10] 다른 방법은 1가구당 한 집에서 한 사람만 치발, 역복을 받아들여 토지소유권을 얻은 후 나머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었다.

당시, 조선반도의 사람들은 조선왕에게 충성하는 의무만 있고 국왕과 조선반도를 이탈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신민들이었다. 청정부가 실시한 "치발역복", "귀화입적"조치는 조선이주민들의 국적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하는 조치로서 실시과정에서 관습법으로, 나아가서는 불문법으로 되어 조선이주민들에게 생존환경과 사회지위를 제공해 주었지만 이중국적을 발생시켜 국적의 적극적인 충돌과 국제분쟁을 초래함과 동시에 청나라 성문국적법의 제정을 촉진시켰다고 할 수 있다.

---

9) 衣保中/刘洁, "间岛问题"的历史真相及中日交涉的历史经验", 史学月刊 第7期, 2005, 75쪽.

10) 강근모, 도문지방의 초기개척; 김택/김인철(대표편저), 앞의 책 1995, 71쪽.

1.2 성문국적법의 제정

19세기부터 시작된 조선이주민들의 이주는 중국의 국적법으로 하여금 불문법으로부터 성문법의 제정을 가져오게 하였다. 성문법은 입법기관에서 제정한 실정법이 주요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성문형식을 갖춘 규범화된 법률이다. 성문법국가에서는 성문형식을 갖춘 국적법으로 외국인과 내국인을 구분한다. 이러한 구분에 의하면 한 나라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은 그 나라의 내국인이 되면서 권리를 누림과 동시에 의무를 분담하면서 그 나라의 관할과 보호를 받는다.

조선이주민들은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이주하였는데, 두만강 이북의 간도(間島: 지금의 길림성연변지구)지역에 집중되었다. 일본은 조선이주민들이 집거한 간도지역에 매우 큰 지리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는 자원이 적고 대륙정책을 추진해 온 일본에게 있어서 간도지역은 풍부한 자원을 가진 지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군사중심지로서 일본열도로부터 조선반도를 지나 중국으로 통하는 교통요지로 보였기 때문이었다. 1905년, 일본은 조선반도와 "을사조약(乙巳條約)"을 체결하고 조선반도의 외교권을 박탈하였으며 조선주재일본통감 이등박문은 육군보병중좌 사이또 히데지로(斉藤秀治郎)를 통감부간도파견출장소장으로 파견하여 육도구[11]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1907년(광서 23년) 8월 13일부터 사무를 보게 하였다.[12]

동일한 시기, 청정부는 화교들의 신분인정, 생명과 자유, 민족의식, 국내외의 지위, 조국에 대한 동질감을 제고시키기 위해 네덜란드 속동인도(屬東印度, 인도네시아)에 영사를 설치할 것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네덜란드정부에 불안을 가져다주었다. 네덜란드는 청정부의 요구에 맞서 담판에 몇 가지 장애를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적법문제를 만들어 1892년에 본국에서 혈통주의를 위주로 출생지주의를 보조로 하는 국적법을 반포하였으나 1907년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출생지주의를 원칙으로 한 국적법을 만들어 인도네시아에서 출생, 거주하는 화교들을 모두 네덜란드 적에 들게 하였다.[13]

조선이주민들이 집중하여 살고 있는 간도지역에 대한 일본의 간섭에 대처함과 동시에 조선이주민들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가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청정부는 성문국적법이 없이 치발역복에만 의거한다면 조선개간민[14]들을 합법적인 중국 사람으로 귀화시키

11) 현재 길림성 용정시.

12) 沈如秋, 延边调查实录, 延边大学出版社, 1987, 8쪽.

13) 冀满红, "论晚清政府对东南亚华侨的保护政策", 东南亚研究 第二期, 2006, 53쪽.

14) 본고에서는 조선이주민으로 용어를 통칭하였는데 피 인용문헌에서는 "조선개간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기 못할 것이라 여겨, 1909년에 각국의 국적법을 참조하여 역사상 처음의 국적법인 "대청국적조례(大淸國籍條例)"를 제정하였다.[15] "대청국적조례"는 제1장에서 고유적(固有籍), 제2장에서 입적(入籍), 제3장에서 출적(出籍), 제4장에서 복적(复籍), 제5장에서 부조(附條), 모두 24조로 되었다. 그 이듬해인 1910년, 본 조약의 실시세칙으로 길림동남노병비도(吉林東南路兵备道)에서는 도문강이북조선간민입적(圖們江以北朝鮮墾民入籍)에 관한 한제세칙(限制細則), 취체세칙(取締細則), 입적세칙(入籍細則) 등을 제정하여 조선 개간민들의 입적에 구체적인 규정을 두었다.[16] 다시 말하면 "대청국적조례실시세칙(大淸國籍條例實施細則)"이 제정된 것이다. 본 실시세칙은 제10조 외 "한제세칙", "취체세칙", "입적세칙", "잡거구비잡거구한민갑을양대응종방법(雜居區非雜居區韓民甲乙兩對應種方法)"으로 되었다. 실시세칙에는 주요하게 연길, 화룡, 훈춘, 왕청 그리고 잡거지구와 비 잡거지구에 거주한 조선이주민들의 국적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었다.

당시 조선인[17]들이 중국국적에 가입한 목적은 아래의 몇 가지 이유였다. 첫째, 중국정부가 줄곧 비 귀화 조선인들의 토지소유권을 승인하지 않은 탓으로 토지소유권을 얻어 중국정부로부터 재산을 보호받기 위해서였다. 둘째, 중국당국, 특히 봉건군벌의 민족압박과 멸시를 회피하기 위해서였다. 셋째, 조선민족주의자와 독립 운동가들이 중국당국의 비호 하에 반일독립운동을 전개하거나 일제의 추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다. 넷째, 중국당국은 귀화조선인들에게만 백호장(百戶長), 향장(鄕長), 향부장(鄕副長) 등 공직을 주었기 때문에 특수한 이익과 은전(恩典)을 얻기 위해서였다. 다섯째, 일제의 관할과 귀화에 불복하기 위함에서였다.[18]

조선이주민들이 동북에 이주한 목적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토지소유권을 얻기 위함이었다. 토지를 위해 그들은 청정부가 실시한 "치발역복", "귀화입적" 정책을 접수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치발역복"을 대가로 "귀화입적"하게 되었고 벼농사에서 성공[19]한 대가로 중국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성문국적법인 "대청국적조례"

였으므로 원저자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15) 孙春日, 中国朝鲜族移民史, 中华史局, 2009, 168쪽.

16) 위의 각주와 동일쪽

17) 본고에서는 조선이주민으로 용어를 통칭하였는데 피 인용문헌에서는 "조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므로 원저자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18) 孙春日, 中国朝鲜族文化发展, 延边教育出版社, 2002, 65쪽.

19) 동북지구에서 비교적 일찍 벼농사를 시작하여 오늘까지 계승하여 온 곳은 료녕성 환인현 하전자이다. 김씨라는 조선인 농민이 이곳으로 이사하여 온 후 몇 해 동안 애쓴 보람으로 1875년에 벼 재배에 성공하여 좋은 수확을 따냈다. 뒤를 이어 1880년에 안동 탕산성과 봉성현 사리채 등지의 조선인농민들이 벼 재배에

및 “대청국적조례실시세칙”이 제정되면서 일정한 사회지위와 법률지위를 얻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중국공산당의 국적조치

2.1 조선이주민들의 토지약사

항일전쟁이 종결된 후 중국에는 공산당과 국민당의 내전이 있었다. 중국에서는 공산당과 국민당의 내전을 해방전쟁이라 부른다. 해방전쟁시기 중국공산당과 국민당은 조선이주민들에 대해 전혀 다른 정책을 취했다. 국민당이 취한 기민정책으로 하여 많은 조선이주민들은 조선반도로 돌아갔으나, 공산당이 취한 무상토지정책은 조선이주민들로 하여금 중국에 정착할 수 있게 하였다.

국민당세력은 조선이주민들의 재산을 일제로부터 얻은 것으로 인정하여 차압하고 몰수하면서 조선이주민들을 배척했는데, 국민당정부가 조선인을 차별하고 억압한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동북지역 거주 조선인을 한교로 취급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곳에 거주하는 자체가 불법이라고 인식한 것이다. 그리고 조선인들이 중국동북지역에서 형성한 대부분의 재산은 일본의 비호 하에 한족지주로부터 약탈이나 강탈한 것이라는 인식에서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20]

국민당수령인 쟝제스(蔣介石)는 한국독립과 동북조선인문제에 대해 비교적 중요시하였고[21] 국민당정부 내의 많은 인사들도 동북조선인들이 처한 상황이 두 민족관계와 동북의 농업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동북조선이주민들의 대우를 개선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22] 대한민국상해임시정부의 김구 주석도 동북조선인들의 사태발전에 대해 매우 큰 관심을 돌려 문의를 하였다고 한다.[23] 이런 저런 압력으로 동북행원(東北行轅)은 1947년 초부터 동북조선인들의 정책에 대해 조정하기 시작하여 상년(上年)에 차압하고 압수했던 조선인들의 자산(資産)에 대해 확인하기 시작

성공하였다. 또한 1883년에 김화룡 등 수명의 조선인농민들이 통화 소만구로부터 류하로 이주하여 벼를 시험적으로 심어 성공하였다. 조명철, 앞의 책, 21쪽에서 인용.

20) 곽승지, 조선족 그들은 누구인가, 인간사랑, 2013, 78쪽.

21) 孙春日, 中国朝鲜族移民史, 中华史局, 2009, 676쪽.

22) 위의 각주와 동일쪽

23) 孙春日, 위의 책, 677쪽.

하였다. 일제 자산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압수하여 국고로 귀속하였고 일제 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차압(差押)을 해제하고 반환하였다.[24] 따지고 보면 동북조선인들의 자산은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이 많았고, 일본의 위세를 믿고 강제로 착복한 것은 적었다 한다. 조선이주민들의 문제에 있어서 1948년 무렵 동북행원의 한 보고서는 조선인 농민들을 박해함으로써 수전 농업이 황폐위기에 직면했으며 이로 인해 군량미 공급에 차질이 생겼음을 언급하는 가운데 국민당정부가 조선인을 배척한 것은 "중대한 실수"였다고 언급했다.[25]

중국공산당은 신민주주의 시기부터 적극적으로 친조선인 정책을 제시했기 때문에 동북지역에서 생활한 조선이주민들은 중국공산당과 연합하여 항일운동을 펼쳤고 동북항일연군 출신 88여단 소속 조선인 중 일부 간부들과 연안에서 활동하다 동북지역으로 진출한 조선의용군은 국공내전 기간 동안 중국공산당 세력의 핵심으로 혁혁한 공을 세웠다.[26] 조선인의 적극적인 지지로 힘을 얻은 중국공산당 세력은 해방 초기의 현격한 전력 차이를 극복하고 1948년 11월 동북지역에서 승리를 쟁취했다.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 파죽지세로 남하했다. 조선인 부대 중 일부는 국공내전 기간 중 북한으로 들어가 북한군에 편재됐지만 적지 않은 조선인들은 최후의 순간까지 중국공산당 세력을 도와 전선을 지켰다. 이에 따라 중국공산당 세력은 국민당정부 세력을 대만으로 몰아내고 1949년 10월 1일 중국대륙에 새로운 정부를 수립했다.[27]

1945년 이후 수많은 조선인 농민들이 중국 동북지역에 자리 잡고 생활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국적 문제가 명확하지 못하였다. 당시 조선인 농민들은 조선반도와 강한 연대감을 갖고 있었고 조선반도를 자기의 조국으로 여기고 그 감정도 아주 깊었다. 다른 한편 조선인 농민들은 중국 동북에 생활의 터전을 개척하면서 수십 년의 정착 세월을 보내왔으나 국적이 명확치 않다고 하여 토지 분여권과 소유권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민족 감정을 손상시키는 우려도 있었다.[28] 조선인들의 토지소유권 문제는 1947년 말에 가서야 보다 분명해졌다. 1947년 10월, 중국공산당은 "토지법대강"을 반포하고 동북행정위원회가 12월 "토지법대강" 실시를 위한 세부규정을 통해 소수민족들의 토지 소유권 문제를 정리한 것이다. "동북해방구 경내의 소수민족들은 응당 한족과 동등하게 토지를

24) 孙春日, 위의 책, 679쪽.
25) 곽승지, 앞의 책, 83쪽.
26) 곽승지, 위의 책, 95쪽.
27) 곽승지, 위의 책, 164쪽.
28) 정신철, 한반도와 중국 그리고 조선족, 모시는 사람들, 2004, 34쪽.

분배받아야 하며 또 소유권을 향유한다."고 규정한 것이다.[29]

1944년 중국에 있는 조선이주민 숫자는 165만 명에 달하였다. 일본이 패전한 후 많은 사람들이 조선반도로 귀환하여 1949년에는 111만여 명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건립을 맞이하였다.[30] 토지개혁에서 중국공산당이 실시한 민족평등정책은 조선이주민들의 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동원시켜 조선이주민들은 중국공산당을 도와 적극적으로 해방전쟁에 참가하였고 전선을 지원하였다.

2.2 중국조선족들의 국적약사

"치발역복", "귀화입적"의 역사를 가진 조선이주민들에게 있어서 국적과 토지소유권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해방전쟁시기 중국공산당의 무상토지분배는 중국공산당이 승전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된 후 조선이주민들이 중국의 공민으로, 중국의 소수민족일원으로 되는 데 정치기반을 마련해 주었고 역사적인 조건이 되었다.

조선이주민들은 중국에 이주한 후 치발역복을 대가로 땅을 부치게 되었으나, 중국공산당이 실시한 토지개혁에서는 무상으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졌다.[31] 이는 조선반도의 역사에 있어 본 적이 없는 일이라 하겠다. 경제력이 상당히 약했던 조선이주민들에게 있어서 땅은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국공내전에서 국민당정부가 승리할 경우, 중국공산당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토지를 상납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며 중국공산당과 함께 해방전쟁에 적극 참가하였다. 그리고 조선이주민들이 집거한 연변지역은 중국공산당의 후방기지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조선이주민들에게 있어서 토지문제를 떠나서 상상할 수 없는 국적문제에 관하여 1946년 1월 1일 연변전원공서(延邊專員公署)의 동곤일부전원(董昆一副專員)은 신년헌사(新年獻辭)에서 처음으로 "중국적을 원하는 한국인[32]들은 중국국적에 가입할 수 있고 중화민국의 국민으로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33] 1948년 12월, 연변지위유준수서기(延邊

29) 곽승지, 앞의 책, 220쪽.

30) 정신철, 앞의 책, 33쪽 참조.

31) 50년대 후반기, 중국에서는 농업합작사제도를 실시하여 농민들의 땅을 인민공사에 귀속시켰다.

32) 본고에서는 조선이주민으로 용어를 통칭하였는데 피 인용문헌에서는 "한국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므로 원저자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33) 孙春日, 中国朝鲜族史稿, 香港出版社, 2011, 334쪽.

地委劉俊秀書記)는 "무릇 과거에 연변지역에 거주하였고 토지개혁에서 당지 민주정부의 호적에 정식으로 가입한 자는 중국공민(城鎭을 포함하여)으로 여긴다."[34]고 강조하였다. 조선이주민들이 중국공민으로 인정받은 사례로는 1949년 9월, 중국연변지위서기(中國延邊地委書記) 겸 연변전원공서전원(延邊專員公署專員)이었던 주덕해가 북경에서 열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기 전체회의에 참석하였고 10월 1일에는 개국대전에 참가[35]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공산당은 동북지역 조선인 농민들의 이주 역사와 현실을 감안하여 그들을 중국공민으로 인정하고 중국에서의 모든 권리를 향유하는 동시에 조선의 사정으로 그들이 원할 때에는 조선공민의 신분으로서 조선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실상 "이중국적"을 승인하였다.[36] 조선족들의 이중국적문제는 "6·25전쟁"이 폭발한 후 중국 외교부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명확히 알려진다.

1950년 9월 22일,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지난 수년간 중국경내에 거주한 조선인민들은 중국인민해방전쟁에 참가하였다.", "조선인민들은 생명을 바치고 피를 흘리면서 중국인민과 함께 제국주의와 봉건주의반동세력과 투쟁하였다. 중국인민들은 그들의 협의(俠義)한 정신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오늘 중국에서는 승리를 거두었다. 중국경내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인민들은 조국에 돌아가서 자기의 조국을 보위하고 조국의 건설사업에 참가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정당한 권리이고 신성한 책임으로서 그 어떤 국가도 그 어떤 이유로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 중국인민들은 그들이 조국을 보위하고 미제국주의 침략전쟁을 반대하여 진행하는 영용한 투쟁에 대해 꼭 동정하고 지지할 것이다."[37]라고 발표하였다.

1950년대 동남아국가들에서는 화교들에 대한 탄압이 있었다. 중국조선족들의 이중국적문제는 1955년에 중국정부와 인도네시아정부가 체결한 "중화인민공화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의 이중국적 문제에 관한 조약"의 체결과 함께 중국에서 이중국적이 부인되면서 종결을 가져와 중국조선족들도 단일국적자로 되었다.

1911년, 쑨원(孫文)은 신해혁명을 일으켜 청조의 통치를 무너뜨리고 중화민국을 건립하였다. 중화민국정부는 1912년에 국적법을 제정하였고 1929년에는 국적법을 개정하였다.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중화민국시기에 국민당이 사용했던 모든 법

34) 孙春日, 위의 책, 335쪽.
35) 孙春日, 위의 책, 338쪽에서 참조.
36) 정신철, 앞의 책, 34쪽.
37) 金景一, "关于中国军队中朝鲜族官兵返回朝鲜的历史考察", 史学集刊 第三期, 2007, 57쪽.

률, 법령들이 폐지되면서 국적법도 폐지되었다. 중국의 현행국적법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문화혁명이 결속되고 개혁개방이 시작된 1980년에 이르러서야 제정되었다. “중국국적법” 제2조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은 통일된 다민족국가이다. 여러 민족은 모두 중국국적을 가진다.”는 규정을 제정함으로서 국적법상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소수민족들의 지위를 확립시켰다.

지난 세기 80년대부터 많은 중국공민들은 발달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고 이주하였으며 중한수교 후인 90년대부터 중국조선족들도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였지만 한국국적을 취득한 일부 귀환동포들은 한국생활에서 만족 대신 불편을 느끼고 있다. 외국국적취득자들의 국적회복의향을 감안하고 날로 강대해지는 중국의 실력을 고려하면서 앞으로 나타날 이민과 역이민에 대비하여 볼 때 “중국국적법”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Ⅲ. 중국국적법의 현안과 과제

1. 중국조선족들의 이주현황

1.1 중국인들의 이주연역

중국역사를 돌이켜 보면 중국인들의 이주는 크게 두 번으로 나눈다. 제1차 이주는 19세기말부터 시작된 동남아로의 이주이고, 제2차 이주는 20세기 말부터 시작된 국제이주이다. 청조의 부패로 생긴 제1차 이주에서 많은 중국인들이 살길을 찾아 동남아로 이주하였다면 제2차 이주는 미국, 유럽 등 발달한 국가로의 이주로서 더 좋은 생활환경을 영위하기 위함이라 하겠다.

원래 청정부는 오랫동안 해외이민을 금지시켰다. 아편전쟁(1840~1842) 후 해외이민금지령은 다소 완화[38]되기 시작하여 1893년에는 해외이민을 범죄로 보던 금령은 종국적으로 폐지되었다. 다시 말하면 출국의 자유가 최종으로 법률에 접수되었다.[39] 영국의 통계에 의하면 청정부가 무너지기 전인 1911년에 4,275,000명에 달하는 중국인들이 해외로

38) 刘国福, 移民法 出入境权研究, 中国经济出版社, 2006, 241쪽.

39) 刘国福, 위의 책, 243쪽.

이주하였는데 대부분은 동남아에 이주하였다 한다.[40]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되던 중국의 정치운동은 1976년에 가서야 결속되었는데 당시 중국의 경제상황을 돌이켜 보면 붕괴의 변두리에 이르렀다고 할 수도 있다. 그 영향으로 수십 년이 지난 2001년, 중국공민들의 1인당 GDP는 911달러였는데 이는 발달한 국가인 일본의 GDP인 32,535달러에 비했을 때 그 격차가 많았다. "세계발전보고"에 따르자면 129개 국가 중 중국의 국민생산 총 산치는 제76위라 분석 했고[41] 중국의 관방통계에 의하면 2003년까지만 해도 중국에는 3000만 농민들의 먹고 입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였고, 2300만에 달하는 성진(城鎭)인구가 최저생활보장금을 받았으며 6000만 장애인들이 사회구제를 요구했다고 한다.[42]

동서냉전시기, 중국의 출입국 상황을 보면 엄격한 제한과 금지가 있었다. 1949년부터 1978년까지 중국에서 매년 개인적 사정으로 출국한 7000인이었다. 1949년의 4억 인구와 1978년의 10억 인구와 비교해 보면 당시 중국인들의 국제적 이동은 거의 없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는 공안부출입경관리처의 임영초(음역)가 언급한 것처럼 개혁개방 전에 출국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했기 때문이다.[43] 1980년대부터 오늘까지 형성된 중국이주민들의 이민국은 미국,[44] 유럽, 호주, 일본, 한국 등의 국가들을 열거할 수 있다.

2013년 12월 17일, 미국의 PewResearch Center연구중심에서 최신보고를 발표하였듯이 중국이민자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재차 긍정하였다. 보고서에서는 중국이민자 수는 23년 전의 제7위에서 4위로 높아졌고 이민자 수는 410만에서 920만으로, 인도(1420만), 멕시코(1320만), 러시아(1080만)에 버금 간다고 하였다.[45] 그런데 이 몇 년간 미국국적 포기의 절차가 번거로움[46]에도 미국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증가되고 있다. 미국

40) 刘国福, 위의 책, 242쪽; 陈浩申(音译), 华工出国史料汇编, 商务印书馆, 1985, 5쪽에서 재인용.

41) 刘国福, 위의 책, 203쪽.

42) 위의 각주와 동일쪽

43) 刘国福, 위의 책, 245쪽 참조.

44) 1965년 이래 실시된 미국의 신이민법은 각국의 이민들에 대해 일시동인(一視同仁)하였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 유럽의 경제번영으로 미국으로 이주하려는 유럽인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주요 혜택자는 아시아인들과 라틴아메리카, 특히 중국인들이었다. 庄国土/张晶盈, 中国新移民的类型和分布, 社会科学 第十二期, 2012, 6쪽에서 인용.

45) 王碧颖, "全球移民报告: 中国第四名", 新民周刊 第一期, 2014, 72쪽.

46) 미국국적포기에는 비용이 든다. 현행 법률에 의해 절차를 마치려면 일반적으로 1년 내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무국적자의 출현을 면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미국의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타국의 국적에 들게 한다. 이 절차에서 위탁변호사에게 3만원좌우의 자문비용을 주어야 한다. 그 외에도 탈적세(脫籍稅)가 있는데 본 비용은 미국의 여권을 바칠 때 납부하는 비용으로서 그 계산이 매우 복잡하여

의 "연방정부기사"에서 공포한 수자에 의하면 미국국적포기를 선고한 인수를 보면 2006년에는 280명뿐이었으나 2011년에는 1780좌우에 달하였다 한다.[47]

현재, 경제가 발달한 국가는 보편적으로 세금제도가 엄격하여 수입이 많을수록 납부해야 할 세금이 많다. 미국은 세금납부액이 높다. 수입이 많을수록 세금도 많이 내야 하기에 전형적인 "겁부제빈(劫富濟貧)"국가이다. 미국의 법에 의하면 미국국민과 영주권을 가진 거민(居民)들은 어디에 가든 세금을 바쳐야 한다. 그래서 중국이민자들은 미국에서 의식주행 시 세금을 바쳐야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중국에서 수입이 발생하여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현행 세율에 의하면 개인 연간 수입이 100만 불일 경우 거의 절반은 미국정부에 "공헌"해야 한다.[48] 세금제도뿐만 아니라 몇몇 원인으로 하여 발달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려는 추세가 전보다 못해질 것이라는 견해들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상황도 동일하다. 이 몇 년간 한국국적을 취득하려는 중국조선족들의 인수는 급속히 적어지고 있다. 2009년 12월부터 도입된 영주권제도와 부동한 국가체제로 하여 얻어지는 불이익, 그리고 한국생활에서의 적응력 미숙 등도 하나의 원인이라 하겠으나 그보다도 중국경제의 급속한 성장이 주된 원인이 아닌가 싶다.

국제이민행렬에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중국이주민들은 발전하고 있는 중국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고, 중국의 경제 증장과 함께 중국국적의 회복과 취득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현상이라 하겠다. 한국국적을 회복 및 취득하고 한국에 이주했던 기존 중국조선족들 중 일부도 중국국적의 회복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1.2 중국조선족들의 이주

1949년부터 1978년까지 중국공민들의 출국은 공무적인 출국 외에는 기본상 금지된 상태라 할 수 있었고 이민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동안 두만강과 압록강을 국경으로 한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역의 출입국과 불법적인 월경은 계속 있었다 한다. 90년대에 이르러 동서냉전이 종결되고 중한수교가 체결되면서 중국조선족들은 한국국적을 회복하거나 취득하고 한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바로 조선반도로의 역이주라 하겠다.

여권을 바치는 날짜에 따라 부동한 규정을 적용한다. 陈拓, 中国移民悄然回归, 新商务周刊, 2012, 8, 20쪽에서 인용.

47) 陈拓, 中国移民悄然回归, 新商务周刊 第八期, 2012, 20쪽.

48) 陈拓, 위의 각주와 동일 쪽.

중국조선족들의 조선반도로의 역이주도 대체로 두 번에 걸쳐 이루어졌다. 한 번은 북한으로의 역이주이다. 지난 세기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발생했던 "대약진운동"과 "3년자연재해"로 조성된 기아(飢餓), 그리고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있었던 "문화대혁명"이 만들어 낸 정치, 경제의 불온정이 원인이 되어 적지 않은 중국조선족들은 북한으로 이주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경제난이 주요원인이 되어 시작된 북한이탈주민들의 탈북은 오늘도 멈추지 않고 있다. 두 번째 이주는 한국으로의 역이주이다. 1992년에 중한수교가 이루어지면서 중국조선족들은 한국국적을 회복하거나 취득할 수 있어 한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국적실무(법무부 예규 제785호: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는 1949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출생한 재중동포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그 시점에 중국국적을 취득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위 지침 3조). 그러므로 이들은 국적회복(국적법 제9조)의 대상이 된다. 반면 1949년 10월 1일 이후 출생한 재중동포는 한국국적을 보유한 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귀화의 대상이 된다.[49] 한국에서는 국적을 회복한 동포든 귀화한 동포든 모두 귀환동포의 범주에 귀속시킨다. 이 같은 내용을 좁게 해석하자면 중화인민공화국 건립일(1949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출생한 동포만이 국적회복대상이 되어 귀환동포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나 한국에서는 광의로 해석되어 국적회복대상이든 귀화대상이든 한국계라면 총칭하여 귀환동포라 명명된다.

한국법무부의 통계에 의하면 근 5년 동안 한국국적을 취득한 중국조선족 인수는 2006년에 14,541명, 2007년에 39,965명(귀화 30,544명, 국적회복 8,231명), 2008년에는 49,068명(귀화 37,208명, 국적회복 10,452명) 2009년에는 67,064명(귀화 53,665명, 국적회복 11,694명), 2010년에는 77,174명(62,897명, 국적회복 12,125명), 2011년에는 8,556명(귀화 7,730명, 국적회복 573명), 2012년에는 4,484명(귀화 4,217명, 국적회복 90명), 2013년에는 4,374명(귀화 3,907명 국적회복 312명)으로 알려진다.[50]

한국국적을 취득한 중국조선족 중에서 적지 않은 중국조선족 여성들이 한국남성과 결혼하고 한국국적을 취득하였다. 그중 위장결혼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했던 10여 명 여성들의 혼인진상이 밝혀지면서 중국국적을 말소시키고 한국국적도 상실당한 현재 그들은 한국에서 무국적자로 생활하고 있다. 오랫동안 한국국적취득을 희망했던 그들도 오

49) 명순구/이철우/김기창, 국적과 법, 그 기원과 미래, 고려대학교법학연구원, 2010, 91쪽.

50)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2006-2013.

늘에 이르러서는 중국국적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1988년에 있었던 서울올림픽에서 최대로 과시된 한국의 경제실력으로 한국국적은 재부의 상징으로 되어 적지 않은 중국조선족들은 한국국적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한국국적을 회복했거나 취득한 일부사람들은 한국생활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다. 더욱이 고향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원이었고 죽어서라도 자기의 뼈를 고향땅에 묻는 것이 한이었던 귀환동포 1세들은 오랜 단절의 시간이 지나 마음속에 그리던 고국을 다시 찾았으나 현재는 중국에서 한국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한국에서 중국을 그리워하면서 "중국국적법"에서 그 답을 찾으려 하고 있다.

2. 중국국적법의 현안과 과제

2.1 귀환동포들의 현황

일제식민지통치시대에는 광복을 위해 싸웠고 광복 후에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진행된 냉전으로 북한만을 고국으로 알고 살아온 귀환동포들은 자본주의 체제를 가진 한국의 사정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그래서 한국국적을 회복했거나 취득하여, 한동안 한국생활을 체험해 온 그들은 한국사회로부터 오는 부정적인 시각을 의식하면서 다시 찾은 조국이 이에 걸맞은 대우를 하지 않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나열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귀환동포들의 사회 환경에서 오는 인식이다.

한국사회는 조선족동포들을 한민족의 일원으로 인정하면서도 이해 부족과 편견 등으로 차별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사회와 조선족사회 간에는 상당한 정도의 갈등이 존재한다. 갈등을 촉발하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이들에 대한 이해 부족이 주된 이유의 하나이다. 한국사회는 조선족동포들이 살아온 고단한 역사와 동포로 살아가고 싶은 원초적 바람을 외면한 채 이들을 중국동북지역에서 가난하게 살아온 친 북한적・친 공산당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틀 속에서 단선적으로 이해하며 구별하고 있다.[51] 그리하여 한국국적을 회복했거나 취득한 귀한동포들은 법상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한국국민이 되었음에도 한국사회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재일조선인들처럼 자기들의 생존에 필요한 울타리와 단체들을 만들어 살아가고 있다.

51) 곽승지, 앞의 책, 15쪽.

다음, 귀환동포들의 생활환경에서 오는 인식이다.

국적회복을 한 동포 1세들은 생활능력이 저조하여 기초생활보조금(한 달 평균 30만원)으로 겨우 지하 단칸방에서 최저생활을 이어 가고 있다.[52] 따지고 보면 실제로 귀환동포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배려는 별로 없다. 중국에서는 풍족하지는 않지만 내 집에서 누릴 것을 누리며 살았는데 한국에 와서는 같은 민족으로부터 멸시받으며 지하셋방살이로 허덕이고 있는 자신들의 처지가 야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한국정부가 자신들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한다.[53]

귀환동포들은 한민족의 슬픈 역사를 한 몸으로 겪은 사람들이다. 한국에는 고려인들을 위한 "고려인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있고 북한이탈주민들에게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있으나 귀환동포들에게는 상응한 법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10년 6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국국적취득동포 한국생활 조기 적응 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있었다. 정책토론회의에서 나타난 조사결과를 보면 국적취득 중국동포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지 열악'이 과반수가 넘는 54.8%로 나타났고, 그밖에 '한국인과의 차별대우'(16%), '취업의 어려움'(9.6%), '자녀초청 불가'(7.6%), '기타'(2.6%), 무응답(9.4%)으로 나타났다.[54] 현재, 한국생활이 중국에서의 생활보다 못하여 한국국적취득을 후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으나 그들은 중국국적을 포기했기 때문에 중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다.

몇 년간 중국조선족들의 한국국적취득은 점차 하강선을 긋고 있다. 앞서 언급한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년보"에서 판단할 수 있듯이 한국국적을 취득한 중국조선족 인수를 보면 2011년에 8,556명, 2012년에 4,484명, 2013년에 4,374명으로 알려 졌다. 발달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중국이주민들은 국가체재의 부동성, 그리고 생존환경의 차이로 하여 국적 취득국에서 적응력에 장애를 느끼고 있다. 한국국적을 취득한 중국조선족이주민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문제는 "중국국적법"의 현행 과제의 하나로 나서고 있다.

52) 국적취득동포생활개선추진위, 국회정책토론회 자료집, "한국국적 취득 동포 한국생활 조기 적응 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토론회", 2010, 34쪽.

53) 위의 자료집, 29쪽.

54) 위의 자료집, 51쪽.

2.2 중국국적법의 과제

2.2.1 단일국적원칙의 모호성

개혁개방이 시작되면서 중국공민들의 출국자유와 함께 외국국적의 신청 및 외국으로의 이주도 많이 자유로워졌지만 반면에 국적의 적극적인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국적법”은 혈통주의를 위주로 하고 엄격한 단일국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중국의 문호개방으로 시작된 국제이주는 국적의 적극적인 충돌을 초래하고 있다.

엄격한 단일국적원칙이 적용된 “중국국적법” 제5조에는 “부모 쌍방 혹은 일방이 중국공민으로서 본인이 외국에서 출생했을 경우 중국국적을 가진다. 그러나 부모 쌍방 혹은 일방이 중국공민으로서 외국에 거주할 경우 출생 시 외국국적에 가입한 자는 중국국적을 가지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고 제8조에는 “중국국적의 가입을 신청하여 비준 받은 자는 중국국적을 가진다. 중국국적의 가입을 비준 받은 자는 외국국적을 보류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다음, 제9조에는 “외국에 정착한 중국공민으로서 자원하여 외국국적에 가입했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했을 경우 자동적으로 중국국적이 상실된다.”는 규정이 있다. 위의 규정 중 “중국국적을 가지지 못한다.”, “외국국적을 보류할 수 없다.”, “자동적으로 중국국적이 상실된다.”는 규정들은 모두 이중국적을 부인하고 단일국적을 주장하는 내용들이지만 이와는 반대로 중국에서는 이중국적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배경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양계주의원칙에서 출현된다. 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한 “중국국적법”은 부모양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부모양계주의를 원칙으로 한 중국공민과 부모양계주의를 원칙으로 한 외국인의 자녀들은 출생지 여하를 불문하고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다.

둘째, 출생지주의원칙에서 출현된다. 중국공민의 자녀로서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 출생지주의를 원칙으로 한 국가에서 태여 난 경우 출생지국의 국적을 신청할 수 있고 중국국적도 신청할 수 있는 탓으로 중국에서도 “원정출산”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국적의 말소에서 출현된다. 중국공민으로서 중국국적포기각서에 서명을 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했거나 위조한 신분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중국의 호적을 그대로 갖고 있고 중국신분증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중국적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외국여권구매에서 출현된다. 일부 사람들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외국여권을 구매하고 있고 일부 여권판매국에서는 자금인입과 외화벌이를 위해 본국의 여권을 공개적으로 판매하거나 그 국가에 일정한 수액을 투자하면 그 나라의 여권을 가질 수

있게 한다.[55] 여권구매자들 모두가 외국의 여권을 소유함과 동시에 여권판매국의 국적을 가졌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여권구매자들이 이중국적자의 행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국적의 적극적인 충돌을 발생시키고 있다.

위에서 볼 수 있는 바처럼 중국에서는 여러 가지 도경으로 이중국적자들이 산생되고 있다. 그 외,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미성년 이중국적자들의 국적선택권문제이다. 중국에서 성년이 되는 나이는 만 18세로서 현재 18세 미만 이중국적자들의 국적은 그들의 부모 혹은 후견인들의 선택에 따라 취득 및 상실된다. 미성년자들의 국적권을 보장하고 이중국적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미성년자들에게 성년이 된 후 일정한 기한 내에 자기의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2.2 국적사항의 미비성

"중국국적법" 제정 시, 동서냉전의 지속과 함께 국적문제는 중국에서 비교적 민감한 문제로 언급되었었다. 그래서 국내외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외국인들의 중국국적의 취득과 중국공민들의 중국국적의 상실이 발생되기 어려웠었다. 이러한 시기에 제정된 "중국국적법"에는 제한적인 내용과 규정들이 불가피 할 것이라 여겨진다.

우선, 국적의 취득에서 알려진다.

국적의 취득에 관한 규정은 "중국국적법" 제7조에 있다. 제7조의 규정에 "외국인 혹은 무국적자로서 중국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아래의 조건을 가진 자는 신청과 비준을 거쳐 중국국적에 가입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인의 근 친속. 둘째, 중국에 정거(定居)한 자. 셋째, 기타 정당한 이유를 가진 자."라는 규정이 있다. 위의 규정은 "중국인의 근 친속"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과 범위가 없고 "중국에 정거(定居)한 자"에 대한 시간적인 규정이 없으며 "기타 정당한 이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없다.

다음, 국적의 상실에서 알려진다.

"중국국적법" 제5조의 규정을 다시 언급하면 "부모 쌍방 혹은 일방이 중국공민으로서 외국에서 출생했을 경우 중국국적을 가진다. 그러나 부모 쌍방 혹은 일방이 중국공민으로서 외국에 정거할 경우, 출생 시 외국국적을 가진 자는 중국국적을 가지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다. 여기에서 언급한 "외국 정거"는 외국의 영주권취득자 혹은 외국에 정거한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정되나 이에 관한 해석은 보이지 않는다. 본 조항을 반대로

55) 马振东/周海民/楼鹏影/柯卫, 新形势下完善 ≪国籍法≫的思考, 上海公安高等专科学校学报 第四期, 2007, 73쪽.

생각해 볼 때, 부모 쌍방 혹은 일방이 중국공민으로서 외국정거가 아니라 중국정거일 경우에는 출생 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라도 중국국적을 보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제9조에는 "외국에 정거한 중국공민으로서 자원하여 외국국적에 가입했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했을 경우 자동적으로 중국국적이 상실된다."는 규정이 있다. 여기에서 자원하여 외국국적에 가입했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했을 경우 중국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되거나 상실시키는 규정이 보이지 않는다. 본 조의 규정을 역으로 생각해 볼 때, 외국에 정거한 중국공민으로서 자원이 아니라 피동(被動, 수반취득 등)으로 외국국적에 가입했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중국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되지 않고 보류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를 가질 수 있다.

제10조의 규정에는 "중국공민으로서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는 자는 신청과 비준을 거쳐 중국국적에서 퇴출할 수 있다. 첫째, 외국인의 근 친속. 둘째, 외국에 정거한 자. 셋째, 기타 정당한 이유를 가진 자."라는 규정이 있다. 본 규정에도 "외국인의 근 친속", "기타 정당한 이유를 가진 자", "외국에 정거한 자"에 대한 범위와 규정이 따로 없다. 본 규정도 역으로 생각해 볼 때, "외국인의 근 친속"이 아닌 자, 그리고 "외국에 정거한 자"가 아니라 국내 정거자로서 외국국적을 신청할 경우에는 국적퇴출의 비준은 받을 수 없고, 동시에 외국국적도 취득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중국국적법" 제1조에는 "중화인민공화국국적의 취득, 상실과 회복은 본 법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고 제16조에는 "중국국적의 가입, 퇴출, 회복에 관한 신청은 중화인민공화국공안부에서 심사, 비준한다. 비준을 받는 자에게 공안부에서 증서를 발급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중국국적법"에는 국적의 가입, 퇴출, 회복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중국공안부의 심사, 비준에 의거로 될 수 있는 법적으로 된 명확한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보면 동서냉전을 배경으로 제정된 "중국국적법"은 아직 틀만 갖추어진 것으로 보인다. 개혁개방 이래 중국에서는 헌법을 포함하여 많은 법률들이 제정되고 개정되었으나 국적문제를 결정하고 처리하는 법률근거인 "중국국적법"은 오늘까지 한 차례의 개정도 거치지 않았다. 국적에 관한 규정들을 보면 공안부의 "국적법실시에 관한 내부규정(시행초안)"[56] 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국적법'이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시행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과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

56) 马振东/周海民/楼鹏影/柯卫, 위의 논문, 73쪽.

회 '중화인민공화국국적법'이 마카오특별행정구에서 시행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이 있을 뿐이고 국적의 취득과 가입, 그리고 회복과 상실에 관한 실시세칙과 국적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글로벌 시대의 요구, 특히는 중국의 경제발전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면서 그 개정이 절박한 것으로 느껴진다.

Ⅳ. 나가는 말

국적에 관한 사항은 국가내부의 관할에서 처리된다. 역사적인 차원에서 판단하자면 제2차 세계대전까지 매개 국가는 주권에 중시를 두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후부터는 인권보호에도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국적권도 보장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한 자연인이 가진 국적은 애국심을 떠나 그 자연인과 국가 간의 정치・경제・문화, 그리고 사법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게 되었다. 국적은 국가가 자국민을 정하고 자국민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법적 근거로 되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에서는 자국의 수요와 권익, 그리고 국제사회의 발전 및 변화에 따라 국적법을 제정하고 개정하고 있다.

1945년 8월에 제2차 세계대전이 결속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동북에서는 공산당과 국민당 간의 국공내전이 시작되었고 조선반도는 미국과 러시아의 점령으로 분단되었으며 세계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의념과 공산주의 의념으로 된 동서냉전이 시작되었다. 동서냉전시기에 제정된 "중국국적법"은 그 조항과 내용들이 비교적 간결하고 이중국적의 방지와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과 국적의 취득과 입적, 회복과 상실에 관한 상세한 규정들이 없는 것으로 여러 나라의 현행 국적법은 물론 1909년에 제정된 "대청국적조례"와 비교・판단하였을 때 그 규정들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의 국적법을 보면 입적・출적・복적에 대한 상세한 규정 외에도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가 있고 "대청국적조례"에도 입적・출적・복적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있다.[57] 현재, 중국국

57) "대청국적조례" 제3장 제3조의 입적규정에는 다음의 규정이 있다.
첫째, 중국에 연속 10년 이상 정거한 자.
둘째, 만 20세 이상이고 그 나라의 법률에 의해 능력이 있는 자.
셋째, 품행이 단정한 자.
넷째, 상당한 자산 혹은 예능을 가져 자립할 수 있는 자.
다섯째, 그 나라의 법률에 의해 입적 후 즉시에 본국의 국적을 말소해야 한다.
그 외 제5조에서는 특별입적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적법은 내용상 많은 보충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동서냉전시기, 중국공민들에게 있어서 중국국적의 보류는 나라에 대한 충성으로, 중국국적의 포기는 나라에 대한 배반으로 느껴졌었다. 탈냉전시기부터 문호가 개방되면서 중국국적의 상실 및 포기는 많이 자유로워졌으나 아직까지 중국국적의 취득 및 회복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늘에 와서 국적의 포기와 상실의 쉬움은 나라에 대한 배반과는 관련성이 적어졌지만 반대로 우수인재 유실을 가져다주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국적의 취득과 회복의 어려움은 우수인재 인입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 중국의 경제번영에는 위대한 경제의식도 있어야 하겠지만 현명한 법제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보여진다.

한국은 스스로 동북아중심을 제기하고 있고 일본은 스스로 동아시아중심을 주장해 왔으며 중국은 스스로 아시아중심을 말해 왔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으로 1949년부터는 사회주의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고 개혁개방의 시작으로 1979년부터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만이 중국을 부강시킬 수 있으며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2009년부터는 사회주의 중국만이 금융위기를 넘겨 줄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겼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세계의 중심이 아시아로, 중국으로 옮겨진다는 주장과 함께 중국으로 향한 이민과 역이민은 불가피 할 것이라 여겨진다.

자국민의 이익과 자국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국적법의 목적이고 국적법개정의 최종 목적으로 되면서 국적법의 가치는 국가의 주권보장과 국민의 인권보장에서 다시 나타난다. 중국은 세계의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있다. 세계중심의 전이와 함께 이제 곧 나타날 이민과 역이민에 대비하여 중국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현행국적법을 국제공법과 사법, 그리고 자국민의 이익과 자국의 권익에 맞먹는 국적법으로 개정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소견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곽승지, 조선족 그들은 누구인가, 경기도: 인간사랑, 2013.

명순구/이철우/김기창, 국적과 법, 그 기원과 미래, 서울: 고려대학교법학연구원, 2010.

정신철, 한반도와 중국 그리고 조선족, 서울: 모시는 사람들, 2004.

김택/김인철, 길림조선족, 연길: 연변인민출판사, 1995.

沈如秋, 延边调查实录, 延吉: 延边大学出版社, 1987.

孙春日, 中国朝鲜族移民史, 北京: 中华史局, 2009.

孙春日, 中国朝鲜族文化发展, 延吉: 延边教育出版社, 2002.

刘国福, 移民法, 北京: 中国经济出版社, 2006.

2. 학술지

孙春日/朴兴镇, “清代越界朝鲜人编入华籍之争与中国国籍法的制定”, 延边大学学报, 第2期, 2000.

衣保中/刘洁, “间岛问题’的历史真相及中日交涉的历史经验”, 史学月刊 第7期, 2005.

冀满红, “论晚清政府对东南亚华侨的保护政策”, 东南亚研究 第二期, 2006.

金景一, “关于中国军队中朝鲜族官兵返回朝鲜的历史考察”, 史学集刊 第三期, 2007.

庄国土/张晶盈, “中国新移民的类型和分布”, 社会科学 第十二期, 2012.

王碧颖, “全球移民报告: 中国第四名”, 新民周刊 第一期, 2014.

陈拓, “中国移民悄然回归”, 新商务周刊 第八期, 2012.

马振东/周海民/楼鹏影/柯卫, “新形势下完善 ≪国籍法≫的思考”, 上海公安高等专科学校学报 第四 期, 2007.

3. 자료집

국적취득동포생활개선추진위, 국회정책토론회 자료집, 한국국적 취득 동포 한국생활 조기 적응 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토론회, 서울: 2010, 29-251쪽.

4. 통계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서울: 2006-2013.

[Abstract]

Emigration of Chinese Korean and Status Quo of China's Nationality Law

Yan, Hai-Yu

Nationality is a Legal basis that one country selected its own national and granted national rights and obligations. Therefore, with the development and changes of international society, in order to maintain rights and interests, a lot of countries enacted and amended nationality law.

Emigration and nationality are closely linked, which clashed with the nationality law. Chinese Korean is an emigration nationality. The positive conflict whose emigration arose ever mad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Nationality Law of Qing Government. China's Nationality Law was enacted under the ground of the Cold War. Its provisions and contents are too simple, and have a certain distance with the requirement of the global era.

After the end of World War Ⅱ, the nationality problem has been developed from the restrictions to the protection of nationality rights. Now a days, the center of the world gradually shifted from Europe to Asia. The transformation has two types. One is to Asia, and the other is to China. No matter that the center of the world transferred to Europe or Asia, with the improvement of China's position and prestig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hina's nationality has gotten the atten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ubsequently, the emigration will cause the positive conflict of nationality.

Protecting the national interests and state's rights and interests is the purpose of the nationality law, and is also the ultimate purpose of amending the nationality law. The value of the nationality law reflects the guarantee of state's sovereignty and national human rights. With the changes of international society, it is necessary for China to amend the existing Nationality Law. The amendment should be in favor of international public law and international private law, its national interests and its rights and interests, and in particular China's prestige and future.

[Key Words] Chinese Korean's emigration, Transfer of world center, Present situation of China's Nationality Law, China's prestige, Revision of China's Nationality Law